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특허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기획 업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(4급 2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11명, 6급 9명, 7급 4명) 중 18명(4급 2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5명, 6급 7명, 7급 3명)은 증원하고, 9명(5급 6명, 6급 2명, 7급 1명)은 2028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, 기술유출 대응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4급 또는 5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지식재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 후단 중 “62명”을 “64명”으로 한다.

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608”을 “1,62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06”을 “1,62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589”를 “1,608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지식재산보호협력국 2개 과	18명
-------------------	-----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지식재산처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39조 관련)

1. 제3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2월 29일)

총계	7
일반직 계	7
6급 이하	7

2. 제3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6월 29일)

총계	9
일반직 계	9
5급 이하	9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생 략)	제35조(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 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62명</u> 을, 3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. ----- ----- <u>64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9조(한시정원) (생 략)	제39조(한시정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하여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 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.</u>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08</u>	<u>1,627</u>	+19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1,606</u>	<u>1,625</u>	+19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589</u>	<u>1,608</u>	+19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30